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소재 낙동강 둔치 내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 추가 조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캠핑장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(당초)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변경)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나. 목적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다. 캠핑장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 사용 관련 정비(안 별표 1~5)

라. 띄어쓰기 정비(안 제8조~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캠핑장”을 “구미시에서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캠핑장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(이하 “캠핑장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미캠핑장 : 구미시 양호동 614-1번지 일원
2.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 :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 일원

제8조제1호 중 “시설사용”을 “시설 사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시설사용료”를 “시설 사용료”로, “배상기준”을 “배상 기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48시간내”를 “48시간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예약가능한”을 “예약 가능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사용수칙”을 “사용 수칙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사용제한”을 “사용 제한”으로, “제한사유”를 “제한 사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준수사항”을 “준수 사항”으로

한다.

제14조 중 “그 다음”을 “그다음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위탁조건, 관리책임”을 “위탁 조건, 관리 책임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을 “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”로 하고, 별표 1 중 “캠핑장 사용료” 표에 “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”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.

별표 2의 제목을 “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율”로 하고, 별표 2 중 “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”을 “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”로,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제목을 “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배상 및 반환 기준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 제목을 “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권”으로 하고, 별표 4 중 “구미캠핑장 시설 사용권(원부)”를 “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(원부)”로 한다.

별표 5의 제목을 “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사용 수칙”으로 하고, 별표 5 중 “시설사용료”를 “시설 사용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
캠핑장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■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(제6조 관련)

□ 캠핑장 사용료

구 분		사용시간	요 금 (원)			비 고
명 칭 (시설위치)	크 기		비수기(성수기제외)		성수기 (7월~8월)	
			주중	주말		
카라반 (구미캠핑장)	8m×12m (최대6인)	1동/1일	100,000	130,000	170,000	전기사용료 포 함
오토캠핑 (구미캠핑장)	9m×9m (최대8인)	1면/1일	30,000	30,000	40,000	
오토캠핑 (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)	10m×10m (최대8인)					
일반캠핑 (구미캠핑장)	4m×5m (최대6인)	1면/1일	25,000	25,000	30,000	전기사용 불가
평 상 (구미캠핑장)	3m×3m (최대8인)	1개소/1일	15,000	15,000	20,000	

□ 부대시설 사용료

구 분	사용시간	사 용 료	비 고
샤워장 (8인실/6동)	07:00~11:00 14:00~22:00	1,000원	1인/1회기준 (7세이하 1회무료)
바비큐그릴	1개/1일	10,000원	20개 보유

□ 주차장 사용료

구 분	사용시간	사 용 료	비 고
카라반 오토캠핑, 일반캠핑	당일 14:00 ~ 다음 날 11:00	무료	1대/1회 (그외 차량은 외부주차)
평상	당일 11:00 ~ 당일 20:00	무료	1대/1회 (그외 차량은 외부주차)

※ 주중 : 월요일 ~ 목요일

※ 주말 : 금요일, 토요일, 법정 공휴일 전일, 법정 공휴일

(공휴일이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함)

※ 성수기 : 7월 1일 ~ 8월 31일 (비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)

※ 캠핑장 사용시간(1일)

- 카라반, 오토캠핑, 일반캠핑 : 당일 14:00 ~ 다음 날 11:00,

- 평상 : 당일 11:00 ~ 당일 20:00

※ 퇴실시간 초과 시 (예약자가 있거나 평상 사용은 연장불가)

- 오토캠핑·일반캠핑 : 시간당 2,000원 사용료 추가,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

-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

■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2]

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율(제7조 관련)

감면대상	대상기간	성수기	비수기		비고
			주중	주말	
1. 구미시민		20%	20%	20%	카라반, 일반·오토 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
2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	-	50%	20%	일반·오토캠핑장,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
3. 장애인		-	50%		
4. 국가보훈대상자		-	50%		
5.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		-	50%		
5. 기타		-	50%		
<p>※ 비 고</p> <p>가.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</p> <p>나.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</p> <p>다.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</p> <p>라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</p> <p>마.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.</p> <p>바.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</p> <p>사.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3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4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<p>아.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 2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) 「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					

■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3]

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배상 및 반환 기준(제8조 관련)

구 분		배상 및 반환기준	비고
주 체	유 형		
사용자 귀 책	·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	·사용료 전액 환급	
	·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	·사용료의 10% 공제후 환급	
	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	·사용료의 20% 공제후 환급	
	·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·사용료의 30% 공제후 환급	
관리자 귀 책	·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	·사용료 전액 환급	
	·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	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% 배상	
	·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	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	
	·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·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% 배상	

※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화산·지진·태풍 예비 특보 이상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.

※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자동 취소되며 자동 취소 시 환불불가

■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4]

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권(제9조제2항 관련)

(앞쪽)

편 철 부 분	NO.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권(원부)	NO.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시설 사용권(원부)	6cm
	1. 사용일자 년 월 일 ~ 년 월 일	1. 사용일자 년 월 일 ~ 년 월 일	
	2. 사용대상 :	2. 사용대상 :	
	3. 사 용 료 : 원 20	3. 사 용 료 : 원 20	
	구 미 시 장 ㉠	구 미 시 장 ㉠	
2cm	7cm	7cm	

(뒤쪽)

편 철 부 분	사용자 인적사항 기재	6cm	
	성 명 :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용권 분실시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. ● 캠핑장 내 개인용 그릴이나 가스불판 외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● 캠핑장 사용 시 안전사항을 준수하며, 음주,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. ●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. ● 캠핑장 내 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합니다. ● 불편사항 연락처 : 054- - -
	연락처 :		
	인 원 :		
	비 고		
2cm	7cm	7cm	

[160mm×50mm(인쇄용지, 70g/㎡)]

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사용 수칙(제10조 관련)

캠핑장 내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입 장

-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사용하셔야 하며, 사용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정원 외 사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합니다.

2. 시설 사용료

-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, 요금은 온라인을 통한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전액을 선납하여야 합니다.

3. 장 소

-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개수대에서만 음식물 및 식기 등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.

4. 자 동 차

- 차량의 출입은 가능한 22:00부터 07:00까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 시 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잔디밭위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며,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.

5. 소 음

- 캠핑장 구역 내에서 폭죽놀이, 고성방가는 금지되어 있으며, 특히 21:00부터 07:00시까지 다 른 사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위 생

- 개인세면도구는 지급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공용비품을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과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쓰레기봉투는 규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.

7. 수목보호

- 사용자는 수목주변에서 가스나 석유연료 등 화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사용하시기 바라며, 수목을 훼손 할 경우 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8. 애완동물

- 모든 애완동물은 출입을 금합니다.

9. 화재와 사고

- 캠핑장 내에서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품사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, 흡연은 불가합니다.
- 음식의 조리 및 화기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
10. 홍 보

-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
11. 유실 또는 피해

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비품 망실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.

12. 긴급사태

-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13. 전기시설

- 과도한 전기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기히터, 그릴, 난로,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사용불가)
-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공급 차단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사용제한 (1kW/일)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.

14. 휴대물품의 제한

-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휴대물품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 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	<p><u>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구미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위치) <u>구미캠핑장(이하 “캠핑장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614-1번지 일원으로 한다.</u></p> <p>제8조(사용료의 반환)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1. 천재지변, 사회재난(감염병 및 붕괴 등)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<u>시설사용이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구미시에</u> <u>서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캠핑</u> <u>장-----.</u></p> 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<u>구미시 낙동</u> <u>강 캠핑장(이하 “캠핑장”이라</u> <u>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</u> <u>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구미캠핑장 : 구미시 양호동</u> <u>614-1번지 일원</u></p> <p>2. <u>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 : 구</u> <u>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</u> <u>일원</u></p> <p>제8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시설 사용--</u></p>

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.

2.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9조(시설의 예약) ① (생략)

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, 별표 4에 따른 캠핑장 시설 사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한다.

③ (생략)

④ 최대 예약가능한 캠핑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1개까지이며,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구미시에서 주관·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0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 (생략)

② 사용자는 별표 5에 따른 캠

-----.

2. -----
----- 시설 사용료 ----- 배상 기준 -----
-----.

제9조(시설의 예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48시간 내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 예약 가능한 -----

-----.

제10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캠핑장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설의 사용제한)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·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사용제한 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제14조(수입금 입금) 사용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 날(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)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--- 사용 수칙-----
--.

제12조(시설의 사용제한) ① ---

----- 사용 제한 ---
----- 제한 사유-----

② --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 준수 사항-----

제14조(수입금 입금) -----

----- 그 다음 -----

-----.

제15조(위탁 관리·운영) ①·②
(생략)
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
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필
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
다.

④ (생략)

제15조(위탁 관리·운영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위탁 조건, 관리 책임-----

--.

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

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(생 략)

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안 제1조 및 제2조제2호

- 2025년 하반기 조성이 완료된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의 시설 관리·운영에 따른 세입 및 세출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캠핑장 사용료 및 운영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 사용료	1,101,536	1,132,379	1,164,085	1,196,679	1,230,186	5,824,865
	소계(a)	1,101,536	1,132,379	1,164,085	1,196,679	1,230,186	5,824,865
세출	○ 인건비	686,977	710,334	734,485	759,457	785,278	3,676,531
	○ 공공운영비	609,540	626,607	644,151	662,187	680,728	3,223,213
	○ 제경비 등	290,809	298,951	307,321	315,925	324,770	1,537,776
	소계(b)	1,587,326	1,635,892	1,685,957	1,737,569	1,790,776	8,437,520
□ 총 비용(a-b)		△485,790	△503,513	△521,872	△540,890	△560,590	△2,612,655

- 인건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(3.4%)을 매년 적용하며, 사용료와 공공운영비 등은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(2.8%)을 매년 적용한다.
-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.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485,790	503,513	521,872	540,890	560,590	2,612,655
민 간						
기 타						
합 계	485,790	503,513	521,872	540,890	560,590	2,612,655

5. 부대의견

- 세입(캠핑장 사용료) 및 세출(캠핑장 운영비) 예산은 추정치로서,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

6. 작성자 : 하천과 수변인프라팀 김대균(☎480-538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세입

-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사용료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사 용 료	카 라 반	384,838	395,614	406,691	418,078	429,785	2,035,006
	오 토 캠 핑	548,769	564,135	579,931	596,170	612,863	2,901,868
	일 반 캠 핑	116,951	120,225	123,591	127,051	130,608	618,426
	평상밋기타	50,978	52,405	53,872	55,380	56,930	269,565
	소 계	1,101,536	1,132,379	1,164,085	1,196,679	1,230,186	5,824,865
계		1,101,536	1,132,379	1,164,085	1,196,679	1,230,186	5,824,865

2. 세출

-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연간 운영비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인 건 비	직접인건비	686,977	710,334	734,485	759,457	785,278	3,676,531
	소 계	686,977	710,334	734,485	759,457	785,278	3,676,531
공 공 운 영 비	일반운영비	350,801	360,624	370,721	381,102	391,772	1,855,020
	수리수선비	84,445	86,809	89,240	91,739	94,307	446,540
	동 력 비	142,227	146,209	150,303	154,512	158,838	752,089
	기 타	32,067	32,965	33,887	34,834	35,811	169,564
	소 계	609,540	626,607	644,151	662,187	680,728	3,223,213
제 경 비	일반관리비	290,809	298,951	307,321	315,925	324,770	1,537,776
	소 계	290,809	298,951	307,321	315,925	324,770	1,537,776
계		1,587,326	1,635,892	1,685,957	1,737,569	1,790,776	8,437,520

소 관 부 서		하 천 과
입 안 자	과 장	전 천 수
	팀 장	이 용 우
	담 당 자	김 대 균 (480-5382)